##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41

발의연월일: 2021. 10. 25.

발 의 자: 조명희・金炳旭・김석기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백종헌 · 성일종 · 안병길

유의동 • 이태규 • 최승재

추경호 · 홍문표 · 황보승희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 고 있음.

그런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6조제 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 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
	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
	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
	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u>	수립·

<u>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 ⑥ (생 략)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 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 야 한다.

<u>⑥</u>·<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